

부천시 만화산업법인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 19) 상정
- 제12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 19)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과장 최 인 용)

가. 제안이유

- 부천시 만화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설립된 부천카툰네트워크(주)가 2005. 12. 2. 해산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설립 당시에 의회에서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경영상 적자로 인하여 결국 청산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치 않도록 하여 행,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p>	<p>○ 철저한 검토와 경영수지 측면을 고려하는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475호
의결 년월일	2006. 1. 20 (제124회)

제출년월일 : 2006. 1. 1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폐지이유

- 부천시 만화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설립된 부천카툰네트워크(주)가 2005. 12. 2. 해산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첨 부

-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

[1999. 01. 15 조례 제162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천시 만화산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법인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무소) ①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법인의 수권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사업) 법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출판 만화사업
2. 캐릭터 창출사업
3. 만화와 관련된 경영사업
4. 사이버 만화대학 운영사업
5. 만화정보제공 및 사이버 쇼핑몰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 (정관) ①법인의 설립과 목적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시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선출과 책무)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9조 (사업년도) 법인의 사업년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경영평가) 시장은 필요할 경우 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시장은 법인에 대하여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경영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인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법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